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372

제출일자 : 2005. 9. .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조례의 목적규정 및 이와 관련된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고, 회의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호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그동안에는 시장을 시정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나. 자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안 제1조, 제2조 및 제10조).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발전 목표의 설정 및 시정 방향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중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양주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 목표 설정 및 시정방향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발전 목표의 설정 및 시정 방향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 4.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등)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